

수원지방법원 2019. 11. 20 선고 2019가단285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2019. 11. 6.

판결 선고2019. 11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0. 12. 27. 접수 제123720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강건우

별지